

[별표 2] 행정처분 세부기준(제1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,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차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- 라. 위반행위를 적발한 당시 이미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.
- 마.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, 직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  - 1)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벤처투자회사

| 위반행위   | 근거 법조문       | 행정처분기준 |       |       |
|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 |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|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| 법 제49조제1항제1호 | 등록취소   |       |       |

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.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| 법 제49조제1항제2호 | 경고 또는 시정 명령 | 또는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 | 등록취소 |
| 3.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| 법 제49조제1항제3호 | 경고 또는 시정 명령 | 또는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 | 등록취소 |
| 4.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49조제1항제4호 | 경고 또는 시정 명령 | 또는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 | 등록취소 |
| 5.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| 법 제49조제1항제5호 | 경고 또는 시정 명령 | 또는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 | 등록취소 |
| 6.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| 법 제49조제1항제6호 | 경고 또는 시정 명령 | 또는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 | 등록취소 |
| 나.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|              | 경고 또는 시정 명령 | 또는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            | 등록취소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<p>다.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<br/>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<br/>하지 아니한 경우</p> | <p>경고 또<br/>는 시정<br/>명령</p> | <p>명령 또<br/>는 지원<br/>중단<br/>업무정지<br/>명령 6개<br/>월, 시정<br/>명령 또<br/>는 지원<br/>중단</p>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라. 영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<br/>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<br/>는 시정<br/>명령</p> | <p>업무정지<br/>명령 6개<br/>월, 시정<br/>명령 또<br/>는 지원<br/>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마. 영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<br/>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<br/>는 시정<br/>명령</p> | <p>업무정지<br/>명령 6개<br/>월, 시정<br/>명령 또<br/>는 지원<br/>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바. 영 제25조제3호에 해당하는<br/>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<br/>는 시정<br/>명령</p> | <p>업무정지<br/>명령 6개<br/>월, 시정<br/>명령 또<br/>는 지원<br/>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사. 영 제25조제4호에 해당하는<br/>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<br/>는 시정<br/>명령</p> | <p>업무정지<br/>명령 6개<br/>월, 시정<br/>명령 또<br/>는 지원<br/>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아. 영 제25조제5호에 해당하는<br/>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<br/>는 시정</p>        | <p>업무정지<br/>명령 6개</p>   | <p>등록취소</p>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<p>자. 영 제25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| <p>명령<br/><br/>경고 또는 명령<br/><br/>명령</p> | <p>시정<br/>명령 또는 지원<br/>중단<br/>업무정지 6개월, 시정<br/>명령 또는 지원<br/>중단</p> | <p>등록취소</p> |             |
| <p>차. 영 제25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| <p>경고 또는 명령</p>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업무정지 6개월, 시정<br/>명령 또는 지원<br/>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             |
| <p>카. 영 제25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| <p>경고 또는 명령</p>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업무정지 6개월, 시정<br/>명령 또는 지원<br/>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             |
| <p>타. 영 제25조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| <p>경고 또는 명령</p>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업무정지 6개월, 시정<br/>명령 또는 지원<br/>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             |
| <p>파. 영 제2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| <p>경고 또는 명령</p>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업무정지 6개월, 시정<br/>명령 또는 지원<br/>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             |
| <p>7.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<b>벤</b></p>  | <p>법 제49조제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는</p>   | <p>업무정지</p> | <p>등록취소</p>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<p>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| <p>1항제7호</p>        | <p>는 시정 명령</p>     | <p>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     |             |
| <p>8.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</p>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<p>가.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법 제49조제1항제8호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나.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다.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라.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마. 영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</p>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<p>바. 영 제36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명령 또는 지원 중단<br/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사. 영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아. 영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자. 영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차. 영 제36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카. 영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</p>    | <p>업무정지 명령 6개월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<p>다. 영 제36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  |                      | <p>명령<br/><br/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| <p>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br/>업무 정지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9. 법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</p> | <p>법 제49조제1항제9호</p> 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            | <p>업무 정지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10.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3조를 위반한 경우</p>   | <p>법 제49조제1항제10호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            | <p>업무 정지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11.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p>   | <p>법 제49조제1항제11호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            | <p>업무 정지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12.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p>   | <p>법 제49조제1항제12호</p> | <p>경고 또는 시정 명령</p>             | <p>업무 정지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등록취소</p> |
| <p>13.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</p>   | <p>법 제49조제</p>       | <p>경고 또는</p>                   | <p>업무 정지</p>   | <p>등록취소</p> |

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 | 1항제13호        | 는 시정 명령     |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      |      |
| 14.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| 법 제49조제1항제14호 | 경고 또는 시정 명령 |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중단 | 등록취소 |

#### 나.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

| 위반행위   | 근거 법조문                  | 행정처분기준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   | 3차 위반              |
| 1.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| 경고     | 직무정지 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|
| 2.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| 경고     | 직무정지 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           |
| 3.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| 경고     | 직무정지 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           |
| 4.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| 경고     | 직무정지 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           |
| 5.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         | 경고     | 직무정지 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, 면     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.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| 조 제1항제6호<br>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| 경고 | 직무정지<br>3개월 | 직 또는 해임<br>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|
| 7.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            | 경고 | 직무정지<br>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           |
| 8. 법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            | 경고 | 직무정지<br>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           |
| 9.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3조를 위반한 경우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0호            | 경고 | 직무정지<br>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           |
| 10.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           | 경고 | 직무정지<br>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           |
| 11.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9조제1항제12호        | 경고 | 직무정지<br>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           |
| 12.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9조제1항제13호        | 경고 | 직무정지<br>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           |
| 13.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9조제              | 경고 | 직무정지<br>3개월 | 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              |

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
1항제14호

해임